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2. 13 선고 2022가단198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경기 양평군 B 임야 2,489㎡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10.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1. 10. 14. 접수 제520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 김수정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과세 경위

- 1)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은 소외 C이 2021. 6. 29. 「경기도 하남시 D아파트 E호」 소재 주택분양권을 양도하고 2021. 8. 17.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10. 12. 소외 C에 대하여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025,500원을 2021. 10. 31. 납기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2021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 2) 소외 C은 이 사건 소재기일 현재까지 납기전 가산세 및 납기후 가산세 28,485,98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276,588,9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채납유무조회).

〈표 1〉 소외 C의 소재기일 현재 국세 채납액

(단위 : 원)

세목명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채납액
양도소득세	2021년	2021.06.29.	2021.10.12.	2021.10.31.	251,025,500	276,588,980

나. C의 부동산 증여행위

소외 C은 2021. 10. 13.경 피고와 아래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2021. 10. 14.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 2> 이 사건 부동산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경기도 양평군 B	임야	2,489

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이며, 피고는 C의 형입니다(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납세의무 성립일 2021. 06. 29.)은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일어난 2021. 10. 13.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는 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성립

가. 소외 C은 2021. 10. 13.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동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2021. 10. 13.) 당시 소외 C의 재산 상태를 보면, 아래<표 3>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채

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갑 제5호증 채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3〉 이 사건 증여계약일(2021. 10. 13.) 당시 C의 재산 내역

(단위 :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비고
적극재산(①)	토지	경기 양평군 B	19,580,133	개별공시지가(갑 제6호증 개별공시지가)
소극재산(②)	조세채무	고지세액 + 가산금	251,025,500	갑 제7호증 징수 결정상세조회
사해행위(③)		형에 증여	19,580,133	
채무초과 (①-②-③)			△231,445,367	

다. 위와 같이 소외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중인 2021. 10. 13.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0.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채납자 소외 C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후 양도소득세 채납처분을 위하여 재산분석을 실시하던 중인 2021. 12. 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소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5. 결 론

가. 채납정리 과정에서 채납자 C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됩니다.

나. 소외 C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2021. 12. 0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알았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로 인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끝.

